

I.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이해

1

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

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개념

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공식적 참여통로로서 유치원운영의 민주성·합리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, 유치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제도임.

■ 도입배경

○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11월 질 높은 유아교육 서비스 제공, 생애초기 출발점 평등 보장, 선진 유아교육 기반 마련이라는 3가지 목표를 가지고 『유아교육 선진화』를 추진함.

○ 이러한 배경으로 도입된 ‘유치원운영위원회’는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며, 유치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을 교원 및 학부모가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■ 성격

- 단위유치원 차원의 교육 자치 기구
- 유치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유치원공동체
- 개성 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

유치원운영위원회의 법적 성격

▶ 법정 위원회

- 유치원운영위원회는 『유아교육법』 및 『유아교육법 시행령』 등에 근거하여 설치·운영하는 기구이다.

▶ 독립된 위원회

-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장(집행기관)과는 독립된 기구이다.

▶ 자문기구

- 유치원운영위원회는 유치원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사립유치원의 경우, 자문하는 기구이다.

II.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

1

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

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

- 유치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위원, 교원위원으로 구성

학부모위원	▶ 당해 유치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
교원위원	▶ 당해 유치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

■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요소

- 위원장 및 부위원장

- 위원장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대표로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로서 정기회·임시회 소집공고, 의사일정의 작성·변경, 의안의 담당소위원회 심의 회부, 집행부서의 심의의안 이송, 건의사항 처리결과 통보 등의 권한을 가짐.
-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함.

- 소위원회

- 안전에 대한 사전 조사, 자료수집, 검토 등을 통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안전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가능함.

- 간사

-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소집, 개최, 심의·자문, 회의기록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함.

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

-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1항)

원 아 수	위 원 수
100명 미만	5 ~ 8명
100명 이상	9 ~ 11명

- ☞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원아 수를 기준으로 유치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.

○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2항)

-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 비율은 위 표의 범위 내에서 당해 유치원의 유치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.

구 분	유 치 원
학부모 위원	60% ~ 70%
교 원 위 원	30% ~ 40%

☞ 유아수가 20명 미만인 국·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으로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3제3항).

☞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에 관해 이를 준용한다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4항). 사립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해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 또는 유치원 규칙으로 정한다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2제6항).

■ 소위원회의 구성·운영

○ 소위원회의 개념

-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기구임.

○ 소위원회 설치와 운영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1항)

- 국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유치원규칙, 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시·도의 조례로 정함.
- 필요시 소위원회에 일반 학부모,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함.

○ 소위원회의 종류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10제2항)

-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유치원의 실정에 맞게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음. (예: 예·결산소위원회, 교육과정소위원회, 방과후과정소위원회 등)

○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

[상임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]

-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중 중요분야에 관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에 필수적으로 소위원회 심사를 거치게 하는 유형임.

[임시위원회로 운영하는 유형]

- 안전 접수 후 본회의 전에 위원장이 구성여부 및 구성위원을 임의로 정함.
- 본회의 진행과정에서 위원장이나 위원들의 요구로 소위원회 구성을 결정하고 위원 선출함.

○ 소위원회가 있는 경우의 안전처리

- 소위원회는 본회의의 안전 심의를 돕기 위한 사전자료 조사기구 이므로 본 회의를 반드시 개최하여야 함. 소위원회 회의 내용으로 본회의 내용이나 결정사항을 대신할 수 없음.

2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

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

학부모위원	▶ 당해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
교원위원	▶ 당해 유치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

☞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격 상실 (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)

<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4제5항>

- ▶ 국공립유치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을 취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.

■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

- 운영위원의 임기는 사·도의 조례 및 사립유치원 정관 또는 유치원규칙에서 정함.